### 여 비 지 침

제정 2009.10.12.<지침 제 2호> 개정 2023.01.01.<지침 제11호>

#### 제1장 총 칙

- 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(재)드림파크문화재단(이하 "재단"이라 한다)의 임·직원이 재단업무로 여행을 하는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재단예산의 적정한 지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여비의 종류) 여비는 운임·일비·숙박비·식비·이전비·가족여비 및 준비 금 등으로 구분한다.
- 제3조(여비의 계산) ①여비는 통상의 경로 및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. 다만, 공무의 형편상 또는 천재·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통상의 경로 및 방법에 의한 여행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실제로 행한 경로 및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.②삭제<2023.01.01>
- 제4조(여행일 수의 계산) ①여행일 수는 여행을 위하여 실제로 필요한 일수에 의한다. 다만, 공무의 형편상 또는 천재·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소요되는 일수는 이에 포함한다.
  - ②제1항 본문의 여행일 수에는 국내여행의 경우 육로여행은 400킬로미터, 수로여행은 200킬로미터에 대하여 1일씩으로 계산한 일수를 초과하여 포함하지 못하며, 이를 적용하여 1일미 만의 나머지가 생길 때에는 1일로 계산한다.
- 제5조(근무지 외 거주지 등으로부터 직접 여행 시의 여비) 근무지 또는 출장지 외의 곳에 거주 또는 체재하는 자가 그 거주지 또는 체재지로부터 목적지까지 직접 여행하는 경우에는 그곳에서 목적지에 이르는 여비액을 지급한다. 다만, 그 여비액은 근무지 또는 출장지로부터 목적지까지의 여비액을 초과하지 못한다.
- 제6조(여비의 구분계산) ①여행도중 법령이나 직급 또는 호봉의 변경 등에

의하여 여비의 계산을 구분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. 다만, 당해 임·직원이 이동 중에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의 목적지에 도착한 날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계산한다. ②같은 날에 여비액을 달리하여야 할 경우에는 많은 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.

- 제6조의 2(여비의 결제와 정산 등) ①국내 출장자 및 국외 출장자가 여비 중 운임(국외 여행의 운임은 제외한다. 이하 이조에서 같다)과 숙박비를 결제할 때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. 다만, 출장지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.
  - ②국내 출장자는 출장을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(起算)하여 1주일이내에, 국외 출장자는 2주일 이내에, 운임과 숙박비의 세부 사용내용을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회계 관계 부서에 운임과 숙박비의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.
  - ③제1항 단서의 특별한 사유와 그 경우의 운임 및 숙박비의 지급 기준,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제2항의 정산신청에 따른 업무절 차는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.

[전문신설 2023.01.01.]

제7조(근무지 외의 거주자를 임용한 때의 여비) 근무지 외의 곳에 거주하는 자를 임용한 경우에는 임·직원 부임의 예에 준하여 새로운 직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### 제2장 운 임

- 제8조(운임의 구분) ①운임은 철도운임·선박운임·항공운임·자동차운임으로 구분하되, 철도운임은 철도여행에, 선박운임은 수로여행에, 항공운임은 항 공여행에, 자동차운임은 철도 외의 육로여행에 각각 지급한다.
  - ②국외여행의 경우 제1항의 운임에는 통행세를 포함한다.
- 제9조(철도운임의 지급) ①국내 철도운임은 별표 1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. 다만, 전철구간에 있어서 철도운임 외에 전철요금이 따로 책정

되어 있는 때에는 철도운임에 갈음하여 전철요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, 이경우 전철요금은 실비로 한다.

- ②국외 철도운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급한다.
- 1. 철도운임에 2등급 이상의 등급구별이 있는 경우에는 최상등급의 철도운임
- 2. 철도운임에 등급구별이 없는 경우에는 그 승차에 요하는 실비액
- 3. 업무상의 시유로 인하여 급행요금 또는 침대요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실비액
- 제10조(선박운임의 지급) ①국내 선박운임은 별표 1에 정하는 바에 따라이를 지급한다.
  - ②국외 선박운임(부선임 및 부두임을 포함한다)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급한다.
    - 1. 선박운임에 2등급 이상의 등급구별이 있는 경우에는 최상등급의 선박운임
    - 2. 선박운임에 등급구별이 없는 경우에는 그 승선에 요하는 실비액
    - 3. 업무상의 사유로 인하여 침대요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실비액
- 제11조(항공운임의 지급) ①국내 항공운임은 별표 1에 정하는 바에 따라이를 지급한다.
  - ②국외 항공운임은 별표 2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정액으로 이를 지급한다.
- 제12조(자동차운임의 지급) ①국내 자동차운임은 별표 1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.
  - ②국외 자동차운임은 실비액을 지급한다.
  -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을 이용하여 업무로 여행하는 경우, 철도 또는 버스운임 대신 별표 2의 2의 기준에 따라 연료비 및 통행로, 주차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. 단 2인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동행하여 출장하는 경우에는 1대의 차량을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<신설 2023.01.01.>
  - ④ 자가용을 이용한 경우에는 통행료 영수증, 출장지에 소재한 주유소에서 결제한 신용카드매출전표, 주차영수증 등 승용차를 이용하여 출장을 이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제출하여야 한다.<신설 2023.01.01.>

제13조(운임지급의 제한) 업무용의 차량 등을 이용하여 여행하는 경우에는 운임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

#### 제3장 일비·숙박비 및 식비

- 제14조(일비·숙박비·식비의 지급) ①국내여행자의 일비·숙박비 및 식비는 별표 1, 국외여행자의 경우는 별표 3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. 다만, 업무형편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지급받은 숙박비 상한액(국외여행의 경우는 식비를 포함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을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에는 당해 여행을 완료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의 사용 시에 받은 매출전표에 세부사용내역이 명시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산을 신청할 수 있다.
  - 이 경우 초과지출금액에 대한 추가지급액은 국내여행의 경우 이미 지급 받은 숙박비의 10분의 3을 넘지 못하고, 국외여행의 경우 2분의 1을 넘지 못하다.
  - ②일비는 여행일 수에 따라 이를 지급하되, 업무용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일비의 2분의 1을 지급한다.
  - ③숙박비는 숙박하는 밤의 수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. 다만, 수로여행과 항공여행에는 숙박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되, 천재·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 유로 육상에서 숙박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한다.
  - ④식비는 여행일 수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. 다만, 수로여행과 항공여행에는 따로 식비를 요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지급한다.
  - ⑤육로 120킬로미터 또는 수로 60킬로미터 미만의 국내여행에 있어서는 일비의 전액과 식비의 3분의 1만을 지급하되, 업무형편상 부득이 숙박한 경우에는 식비의 차액과 숙박비를 지급할 수 있다. 이 경우 동일여행이 육로와 수로에 걸치는 경우에는 수로 1킬로미터를 육로 2킬로미터로 계 산한다.
- 제15조(동일지역 장기 체재 중 일비 등의 감액) ①같은 곳에 장기간 체재 하는 경우의 일비 및 숙박비(국내여행의 숙박비는 제외한다)는 그곳에

도착한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5일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일 수에 대하여 정액의 10분의 1에 상당한 액을, 30일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일 수에 대하여 정액의 10분의 2에 상당한 액을, 60일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10분의 3에 상당한 액을 감하여 지급한다. 다만, 업무의 성질 또는 지역의 실정에 비추어 본문의 감액비율의 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액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.

②제1항의 경우에 장기체재 기간 중 일시 다른 지역에 출장하는 경우에는 그 출장기간을 공제하고 그 체재기간을 계산한다.

- 제16조(시내출장 시의 여비) ①시내출장의 경우에는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2만원을, 4시간 미만인자에 대하여는 1만원을 지급한다. 다만, 전용차량 배정자에 대하여는 이를지급하지 아니하며, 업무용 차량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1만원을 감하여지급한다.<개정 2023.01.01.>
  - ②제1항에서 "시내출장"이라 함은 서울, 인천, 경기를 동일하게 본다. <개정 2023.01.01.>
  -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천광역시 서구, 경기도 김포시 출장 시의 여비는 지급하지 아니한다.<신설 2023.01.01.>

### 제4장 보 칙

제17조(임·직원이 아닌 자의 여비) 공무수행을 위하여 임·직원이 아닌 자를 여행하도록 하는 경우 여비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임·직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도 이 규정을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, 그 지급구분은 별표 4에 의한다.

### 부 칙

이 지침은 2009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

이 지침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(제9조 내지 제12조 및 제14조제1항 관련)<개정 2023.01.01.>

## 국내여비지급표

(단위: 워)

Э Н	철	도	선	박	항	공	자등	F차	일 비	숙병	박비	식 비
구 분	순	임	운	임	운	임	운	임	(1일당)	(10	<b>갸</b> 당)	(1일당)
이사장 및 임원	실 l (특성		실 (1등		실 (1등		실	비	20,000	실	비	25,000
1급이하	실 l (일반	·	실 (2등		실 (2등		실	비	20,000	서울 <sup>5</sup> 70,0 광역시	000, 60,000, 의 지역	20,000

- 비고 : 1. 항공운임은 실비로 지급하되,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있는 경우에는 별표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.
  - 2. 버스운임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 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 안에서 정하여진 버스요금을 기준 으로 한다.
  - 3.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한다.

[별표 2](제11조제2항 관련)

### 국외항공운임정액표

子	분	항 공 운 임
이사장 및	및 임원	1등정액
1급이	िहो	2등정액

# [별표 2의2](제12조제3항 관련)<신설 2023.01.01.>

# 자가용 이용시 운임 기준표

구 분	지 급 기 준						
	여행거리×유가÷연비						
	[비고]						
	1. 여행거리(km) : 한국도로공사						
	( <u>WWW.roadplus.co.kr)나</u> 민간에서 제공하는						
	거리계산방법을 활용						
	2. 유가(원/L) : 한국석유공사						
	유가정보서비스( <u>WWW.opinet.or.kr)에</u> 고시된						
연료비	출장시작일의 유가(휘발유 차량은 보통휘발유, 경유						
	차량은 자동차용 경유, LPG차량은 자동차용 부탄)를						
	적용						
	3. 연비						
	7 13	휘발유	거 ㅇ 키라	I DC의라			
	구 분	차량	경유 차량	LPGAFS			
	연비(km/L)	11.57	12.12	8.52			
통행료	실비						
주차료 등	실비						

#### [별표 3](제14조제1항 관련)

# 국외여비정액표 및 준비금

#### 1. 일비, 숙박비, 식비

(단위: 미불화)

구 분	등 급	일 비	숙박비	식 비
	가	40	205	133
사장	나	40	149	99
^F^8	다	40	118	72
	라	40	100	61
	가	35	166	107
임원	나	35	120	78
급전	다	35	92	58
	라	35	79	49
	가	30	145	81
1그 미 0그	나	30	95	59
1급 및 2급	다	30	70	44
	라	30	62	37
3급이하	가	26	129	67
	나	26	87	49
	나 다 라	26	64	37
	라	26	56	30

비고 : 등급구분은 공무원여비규정 별표4의 비고를 기준으로 한다.

#### 2. 준비금

(단위: 미불화)

여행기간별		준 비 금	
구 분	여행기간이 15일 미만인 경우	여행기간이 15일 이상 30일 미만인 경우	여행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
사장	150	180	210
임원	140	170	195
1급 및 2급	130	155	180
3급이하	120	145	170

비고 : 해외사무소 부임시에는 여행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로 보아 지급한다.

# 임·직원이 아닌 자의 여비지급구분표

해 당 자	지 급 기 준
1. 공무원	
가. 1급 또는 1급상당 이상	이사장에 상당한 여비
나. 2~3급(국장급에 한한다) 또는	임원에 상당한 여비
2~3급(국장급에 한한다)상당	
다. 3급(과장급에 한한다)~5급 또는	1~2급 직원에 상당한 여비
3급(과장급에 한한다)~5급상당	
라. 위 가~다에 해당하지 아니한 공무원	3급이하 직원에 상당한 여비
┃ ┃2. 정부투자기관·재투자기관 또는	비교되는 직위의 임·직원에 상당한
정부재정지원기관의 임·직원	व्हे भो
3. 민간기업체의 임·직원	임·직원과 비교되는 직위 및 업무의
	중요도를 고려하여 출장을 실시하는
	부서의 장이 정하는 여비
4. 기타 임·직원이 아닌 자	업무의 성격, 동반 임·직원의 직위
	및 당해 임·직원이 아닌 자의 경력
	등을 고려하여 출장을 실시하는 부
	서의 장이 정하는 여비